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2026. 09.

- 목 차 -

1. 일반사항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5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30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3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 1.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公社에서 시행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용역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1.4. 참여업체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90점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0개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10위까지(동점자 포함) 입찰에 참여토록 한다.(평가결과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를 실시하는 경우 등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시 공지할 수 있다.
- 1.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를 개별통보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서식4) 작성 및 합계계산 착오로 당초 자기평가서 점수보다 낮게 평가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통보한다.

- 1.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7.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1.8.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公社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公社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1.8.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 1.8.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1.9.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실적, 감점, 평가점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1차 심사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를 한다.
- 1.10.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10.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가. “계약취소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시 제시하며,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업무중복도 평가 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7일이상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하고 평가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1.10.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입대, 이민, 3개월 이상의 질병·부상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 1.1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참여 동의서(서식 17)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17-1)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본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서식4)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1.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公社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변조·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13.1. 사업수행능력평가지 확인되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 1.13.2.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1.13.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14.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 원본을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경력사항 등 확인할 수 있다.
- 1.1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pm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지분율대로 미투입시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이상 미참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1.16.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에 대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公社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1.17.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기준(건설기술진흥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장은 평가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세분화된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상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2.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면접(발표), 기술제안서평가, 기술인 평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2.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별표2)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2.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주된 공종의 상주기술인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토록 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교육수료증 첨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 2.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2.4.1. 참여기술인은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며,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기분야,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가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전기분야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방분야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4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4.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참여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이라 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분야별기술인”이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 등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용역 발주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수를 조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의 등급은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포함한다.
 - 2.4.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2.4.3.1. 감독 업무는 건진법 제2조 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 2.4.3.2.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진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설계감리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수행한 안전관리업무를 말한다.
- 2.4.3.3. 감리 업무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감리를 포함한다.)
- 2.4.3.4. 시공 업무는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시공관리책임자, 현장감독(민간), 시공담당, 공무담당)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2.4.3.5.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시공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검사 등을 품질시험(관리)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2.4.3.6.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2.4.3.7. 안전진단 및 점검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2.4.3.8. 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조달, 계약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4.4. 해당분야 경력평가

2.4.4.1. 주된 공종이 “토목 및 조경분야”인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토목 및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해당분야 경력은 건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별표1-1)의 건설공사 업무(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수행 실적으로 100%를 인정하며,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은 6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4.4.2. 주된 공종이 “건축분야”인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해당분야 경력은 “별표 1-2”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별표1-2”의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일반 건축물 건설공사」 이외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인정범위는 공고시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2.4.5. 직무분야 실적평가

2.4.5.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등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예시 : 토목, 건축, 기계, 조경(국토개발), 환경, 도시·교통 등

2.4.6.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 업무분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사업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4.7.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건설사업 관리(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2.4.7.1. 건진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4.7.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2.4.7.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2.4.7.4. 건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2.4.7.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공사비가 미 표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력확인서류 첨부.

2.4.8. 상주기술인 평가시 건설사업관리현장에서 상주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고,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 상주건설사업관리 및 기술지원건설사업 관리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상주 또는 기술지원 경력을 구분할 수 없는 경력사항은 기술지원 경력으로 인정(상주경력 불인정)한다.

2.4.9.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의 경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2.4.1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2.4.10.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가.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나.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2.4.10.2. 1주일이상 교육인정범위는 5일(35시간)이상만 인정하며, 기간이 2일, 3일인 교육을 합산하는 것은 교육이수로 인정하지 않음(단,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명)으로 2일, 3일 이수한 교육은 합산하여 1주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2.4.10.3. 전기분야 참여기술인(감리원)의 경우 건진법 제20조 제2항 및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7에 의한 교육을 모두 인정한다.

2.4.10.4.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인(감리원)의 경우 건진법 제20조 제2항 및 정보통신공사법 제38조에 의한 교육을 모두 인정한다.

2.4.11.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실적 경력산정시 경력기간(일)을 30.4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단, 연단위의 경력산정은 총 경력기간(일)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예 : 경력이 790일인 경우 : $790\text{일} \div 30.4\text{일} = 25.987 \approx 25\text{개월}$ 적용

경력이 1,234일인 경우 : $1,234\text{일} \div 365\text{일} = 3.381 \approx 3\text{년}$ 적용

2.4.12. 참여기술인 경력평가지 경력확인서상 다음 경력사항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

2.4.12.1. “유지관리”, “유지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경력

2.4.12.2. 담당업무 또는 공사명 등이 2개 이상 중복 명시되거나 경력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사항

※ 예 : ① 견적, 현장대리인 ② 감리 및 현장대리인 ③ 설계 및 감독 ④ 시공, 공무
⑤ 설계 및 감리 ⑥ 00공사, 00공사 외 7건 등

2.4.13. 참여기술인에 대한 발행 기관별 경력확인서류는 다음과 같다.

참여기술인	발행기관	관련법령	비 고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진흥법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서류 제출
전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한국소방시설협회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 정보통신분야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서 제출

2.4.1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기술인이 공고시 제시된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2.4.15.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4.16. 면접(발표) 평가

2.4.16.1.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발표)평가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용역 이외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4.16.2. 면접(발표)평가를 적용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서식20”에 따라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면접(발표) 해당자]의 자기소개서 (반드시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제본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4.16.3. 면접(발표)은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을 구분하며, <별지1> 및 <별지1-1>의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한다.

2.4.16.4. 면접(발표)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시 제시한다.

2.5.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한 평가시 처리기준

2.5.1.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계약취소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시 제시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용역 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된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2.5.1.1. 당해 용역에 상주로 참여하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 참여하는 경우

2.5.1.2.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로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5.1.3.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배치계획이 당해 용역배치일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상주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2.5.1.4.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2.5.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사항에 대하여 서식13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미신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6. 소방기술인(감리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6.1. 일반 소방기술인(감리원)를 배치하는 경우

2.6.1.1.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16층미만 아파트일 경우 연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당해용역 포함 5개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고, 당해용역 포함 6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서식 13-1 일반소방기술인(감리원) 배치현황 작성)

2.6.1.2. 소방기술인(감리원)의 자격(등급) 등 당해용역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감리원의 자격(등급) 및 배치인원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공고문 또는 과업내용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2.7. 유사용역수행실적

2.7.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 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2.7.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7.2.1. 토목 및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토목 및 조경분야의 해당분야(유사용역)(별표1-1)에 따라 시공단계 건설 사업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 또는 60%를 적용한다.

2.7.2.2.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해당 용역과 유사한 공종(별표1-2의 “해당분야” 또는 “해당분야 이외” 적용)에 대하여 건진법에 의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100%를, 건진법 이외의 법(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실적은 70%를 적용한다.

※ 예 : 최근 3년간 실적계산

①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착수일 2010. 3. 1, 준공일 2014.12.31.일 경우, 공고일이 2015. 5. 1이면,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감리)기간은 2012. 5. 2부터 2014.12.31까지 금액계상[2012. 5. 2부터 2014.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

②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착수일 2013. 3. 2, 준공예정일 2015.12.31.일 경우, 공고일이 201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3. 3. 2일부터 2015. 5. 1까지 금액계상 [2013. 3. 2부터 201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 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리비)]

2.7.3. 당해 건설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금액은 천원단위까지 산정(서식9)하고, 자기평가서(서식4)의 실적란에는 억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2.7.4.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7.5. 용역수행성과에 대하여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공동 및 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공동 및 분담이행의 업체 중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1.6의 점수로 산정한다.

2.8. 신 용 도

2.8.1. 영업(업무)정지, 부실별점

2.8.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8.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이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8.2. 재정상태 건실도

2.8.2.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별표3)을 적용한다.

2.8.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8.2.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8.2.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9.1. 개발·활용실적

- 2.9.1.1. 건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2.9.1.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2.9.1.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2.9.1.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발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9.2. 투자실적

- 2.9.2.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9.2.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2.9.2.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진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9.2.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2.10. 교체빈도

- 2.10.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를 포함한다.)
- 2.10.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 2.10.3. 전기분야(참여업체의 교체빈도는 평가제외) 참여기술인의 경우 교체빈도는 전력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점수산정에 포함한다.
- 2.10.4. 정보통신분야 및 소방분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는 평가제외한다.

2.11. 가·감점사항

2.11.1.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2.11.1.1.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이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다.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절감금액)
-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발급자·날인, 발급자연락처)

2.11.1.2. “서식16”의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에 참여기술인의 “절감기여율”을

반드시 명기하여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16”에 “공사비 절감금액”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공사비절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으로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2.11.1.3.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은 건설분야 기술인(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 등)에 해당하며,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술인(감리원)는 제외한다.

2.11.1.4. 공사비절감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경우(동일 분야)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4 “공사비 절감실적 인정 동일분야 분류 기준”의 전문분야분류 및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1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11.2.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1% 이상 : 0.1점

나. 2% 이상 : 0.2점

다. 3% 이상 : 0.3점

2.11.2.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2.11.2.3.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 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고용사실을 증명해야 함.

2.11.2.4.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11.2.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2.11.2.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3.1.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소 계		6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21)	절대·상대평가
	- 등급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15(11)	
	- 직무분야실적		9	
	- 교육훈련		1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23)	절대·상대평가
	- 등급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15(13)	
	- 직무분야실적		9	
	-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기술인		10	절대평가
	- 등급		3	
	- 해당분야경력		6	
	- 교육훈련		1	
	(4) 면접(발표)		6	상대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상대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절대평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금액(최근 3년간)		8	
	(2)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2	
다. 신용도	소 계		15	절대평가
	(1)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7	
	(2) 벌점		5	
	(3) 재정상태 건설도(신용평가 등급기준)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10	절대평가
	(1) 개발·활용실적		3	
	(2)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소 계		5	절대평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2)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감점	소 계		최대 5	절대평가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 배점의 괄호()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대상이외 평가[면접(발표)]시 적용함.

3.2.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3.2.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5 (21)	○ 건진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기술인의 경력(배치된 1개 현장에서 연속된 근무기간 1년이상)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당해용역 공고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책임기술인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가)해당분야 경력	15 (11)	<table><tr><th>해당공사 규모</th><th colspan="5">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th></tr><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tr><td>점수</td><td>15 (11)</td><td>13.5 (10)</td><td>12 (9)</td><td>10.5 (8)</td><td>9 (7)</td></tr></table>	해당공사 규모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1)	13.5 (10)	12 (9)	10.5 (8)	9 (7)
	해당공사 규모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1)	13.5 (10)	12 (9)	10.5 (8)	9 (7)																																		
(나)직무분야 실적	9 3	※ ()의 배점은 책임기술인의 면접(발표) 평가시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 3점																																					
		<table><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 (단위 : 년)</th></tr><tr><td>특급기술인</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고급기술인</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3	2.7	2.4	2.1	1.8																																		
		6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 6점																																				
			<table><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 (단위 : 년)</th></tr><tr><td>특급기술인</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고급기술인</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점 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4	4.8	4.2	3.6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1	○ 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의 배점은 책임기술인의 면접(발표) 평가시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	○ 해당용역 공고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참여기술인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요건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가)해당분야 경력	15 (13)	<table><tr><td>해당 공사규모</td><td colspan="5">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월)</td></tr><tr><td>300억원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 42이상</td><td>42미만 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tr><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28이상</td><td>28미만 20이상</td><td>20미만 12이상</td><td>12미만</td></tr><tr><td>100억원미만</td><td>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 12이상</td><td>12미만 6이상</td><td>6미만</td></tr><tr><td>점수</td><td>15 (13)</td><td>13.5 (11.7)</td><td>12 (10.4)</td><td>10.5 (9.0)</td><td>9 (7.8)</td></tr></table>	해당 공사규모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	13.5 (11.7)	12 (10.4)	10.5 (9.0)	9 (7.8)									
	해당 공사규모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	13.5 (11.7)	12 (10.4)	10.5 (9.0)	9 (7.8)																																					
(나)직무분야 실적	9 3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경력 인정.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 3점																																								
		<table><tr><td>등 급</td><td colspan="5">점 수(단위 : 년)</td></tr><tr><td>특 급</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tr><td>고 급</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중급이하</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점 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경력 인정.																																								
		6	○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 6점																																							
			<table><tr><td>등 급</td><td colspan="5">점 수(단위 : 년)</td></tr><tr><td rowspan="2">특 급</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r><td rowspan="2">고 급</td><td>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 colspan="2">2미만</td></tr><tr><td>6.0</td><td>5.4</td><td>4.8</td><td colspan="2">4.2</td></tr><tr><td rowspan="2">중급이하</td><td colspan="2">3이상</td><td colspan="3">3미만</td></tr><tr><td colspan="2">6.0</td><td colspan="3">5.4</td></tr></table>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3.6	고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중급이하	3이상		3미만			6.0		5.4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3.6																																					
고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6.0	5.4	4.8	4.2																																						
중급이하	3이상		3미만																																							
	6.0		5.4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경력 인정.																																							
	(다)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3)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0	○ 해당용역 공고시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등급	3	○ 참여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tr><td>해당공사 규모</td><td colspan="2">등 급 (점수)</td></tr><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td>특 급</td><td>고 급 이하</td></tr><tr><td>3</td><td>2</td></tr><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td>고 급 이상</td><td>중 급 이하</td></tr><tr><td>3</td><td>2</td></tr></table>	해당공사 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	고 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 급 이상	중 급 이하	3	2																						
	해당공사 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	고 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 급 이상	중 급 이하																																				
	3	2																																				
(나)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tr><td>해당공사 규모</td><td colspan="5">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td></tr><tr><td>1,000억원 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tr><td>500억원미만 300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300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해당공사 규모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해당공사 규모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발표)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면접(발표)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표2)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table><tr><td>구분</td><td>책임기술인</td><td>분야별기술인</td></tr><tr><td>배 점</td><td>4점</td><td>2점</td></tr></table> ※면접평가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술인평가(S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배 점	4점	2점																													
구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배 점	4점	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SOQ 또는 TP 작성기준은 해당용역의 집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제시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인(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 실적을 인정 <table><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th></tr><tr><td>3,000억원 이상</td><td>100이상</td><td>100미만 90이상</td><td>90미만 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td></tr><tr><td>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td></tr><tr><td>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 40이상</td><td>40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td></tr><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100억원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 *산정방법 : 건진법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 100%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 7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세부적용공종(아파트, 업무시설, 도로, 단지조성, 조경 등)은 공고시 별도로 제시한다.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10	9	8	7	6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10	9	8	7	6																																																				
	(2)용역수행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h>용역평가 결과</th><th>95점이상</th><th>95점미만 92점이상</th><th>92점미만 89점이상</th><th>89점미만 86점이상</th><th>86점미만</th></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재정상태 건설도	3	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참여기술인이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별표 3>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tr><td rowspan="2">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2.0점/건당</td></tr><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5점/건당</td></tr><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가 중 치</th></tr><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h>0.5</th></tr><tr><td>실적건수 (건)</td><td>50이상</td><td>50미만 40이상</td><td>40미만 30이상</td><td>30미만 20이상</td><td>20미만 10이상</td><td>10미만 0.30이상</td></tr><tr><td>실적금액 (억원)</td><td>200이상</td><td>200미만 180이상</td><td>180미만 160이상</td><td>160미만 140이상</td><td>140미만 120이상</td><td>120미만 100이상</td></tr></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특허에만 적용) <table><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able>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0.30이상	실적금액 (억원)	200이상	200미만 180이상	180미만 160이상	160미만 140이상	14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0.30이상																															
실적금액 (억원)	200이상	200미만 180이상	180미만 160이상	160미만 140이상	14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tr><td>구분</td><td>1.5%이상</td><td>1.50%미만 1.25%이상</td><td>1.25%미만 1.00%이상</td><td>1.00%미만 0.75%이상</td><td>0.75%미만 0.50%이상</td><td>0.50%미만</td></tr><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table>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table><tr><td>교체빈도율(%)</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이상</td></tr><tr><td>점 수</td><td>3</td><td>2.5</td><td>2</td><td>1</td><td>0</td></tr></table>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으로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2.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table><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미만 5억원 이상</td><td>5억원미만 1억원이상</td></tr><tr><td>절감비율</td><td>1.0% 이상</td><td>1.0%미만 0.5% 이상</td><td>0.5%미만 0.1%이상</td></tr></table>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경우(별표4)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	5억원미만 1억원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미만 0.5% 이상	0.5%미만 0.1%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	5억원미만 1억원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미만 0.5% 이상	0.5%미만 0.1%이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원 초과하거나 10억원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원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별표 1-1)

해당분야(유사용역) 인정범위(토목 및 조경분야)

1.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도로(교량)공인 경우

구 분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해당분야 (유사용역)	▪법정도로(시,군도등)이상 도시계획도로, 농 어촌도로 폭 6.0m이상의 건설공사업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100%적용	▪법정도로(시,군도등)이상 도시계획도로, 농 어촌도로 폭 6.0m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용
해당분야 (유사용역)이 외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하여 60%적용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의 시공단계 건 설사업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60% 적용

2.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상·하수도공인 경우

구 분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해당분야 (유사용역)	▪상·하수도 설치, 물재이용관리, 하수처리시 설 등 상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100%적용	▪상·하수도 설치, 물재이용관리, 하수처리 시설 등 상하수도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 업관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 용
해당분야 (유사용역) 이외	▪기타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 하여 60%적용	▪기타 토목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60%적용

3.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단지조성공인 경우

구 분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해당분야 (유사용역)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단지조성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하여 100%적용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단지조성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 리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용
해당분야 (유사용역) 이외	▪기타 토목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 하여 60%적용	▪기타 토목분야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의 60%적용

4.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조경공인 경우

구 분	기술인 경력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평가
해당분야 (유사용역)	▪조경분야(도시개발·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 단지 등 단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녹지조 성사업 등)의 건설공사업무 수행실적에 대 하여 100%적용	▪조경분야(도시개발·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 단지 등 단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녹지조 성사업 등)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에 대한 인정범위의 100%적용
해당분야 (유사용역) 이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로 한다
- ※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으로 평가하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적인정.
- ※ 위 표의 공종이 없거나 유사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는 규모,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공고시 제시한다.

(별표 1-2)

해당분야경력 인정범위(건축분야)

1.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인 경우

구 분	건설공사	실적(경력)적용 범위
해당분야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수행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 실적(경력)에 대하여 100% 적용 ▪감리,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해당분야 이외	▪건진법 이외의 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수행실적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일반건축물 건축공사 수행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2.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

구 분	건설공사	실적(경력)적용 범위
해당분야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당해용도의 건축공사 수행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 실적(경력)에 대하여 100% 적용 ▪감리,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해당분야 이외	▪당해용도 이외의 건진법, 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공사 수행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실적(경력)에 대하여 60% 적용

3. 적용사항

- 가. “감독” 실적(경력)은 건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공사관리) 경력임.
- 나. 조경(국토)분야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이외”는 모든 조경공사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60% 인정함.
- 다.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이외”는 “택지조성”, “대지조성”, “단지조성” 공사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을 60% 인정함.
- 라. 전기분야 참여기술인의 실적(경력)인정범위
- 주된공종이 공동주택(아파트)건설공사인 경우 :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주거시설(21)” 참여경력을 해당분야(100%)로 인정하며, 건진법 이외의 법에 의한 “주거시설(21)” 및 건진법에 의한 건축물시설(2)을 해당분야 이외(60%)로 인정한다.
 - 주된공종이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 : 건진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한 건축물

시설(2)중 당해용도와 유사한 건축물시설 참여경력을 해당분야(100%)로 인정하며, 당해용도 이외의 건진법, 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시설(2) 참여경력을 해당분야 이외(60%)로 인정한다. 단, 해당분야(100%)로 인정되는 당해용도와 유사한 건축물 시설은 공고시 제시한다.

※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따른 세부분류를 적용한다.

- 마.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이외”는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을 60%인정하며, 참여사업명(공사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주자 등의 기재 사항이 명확한 실적(경력)만을 인정함.
- 바. **소방분야 참여기술인**은 자격 및 등급, 업무종첩사항, 자격(업무)정지 및 부실벌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배치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함.
- 사. 유사용역수행실적(참여업체) 평가시에는 1항 및 2항의 “해당분야”의 용역수행실적을 100%인정, “해당분야 이외”의 용역수행실적을 70%로 인정한다.

(별표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함					

(별표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 4)

공사비 절감실적 인정 동일분야 분류기준

전문분야분류	적용범위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항만 및 어항 - 간척 - 하천 - 상수도시설 - 댐	- 외곽 및 계류시설, 선박통제시설 등 포함 - 방조제, 배수지, 정수장, 종합치수공사 등 포함
단지개발	- 택지개발 - 공업용지조성 - 매립 - 공원 - 조경시설 - 농지정리 - 관개수로 - 단지 및 도시계획	- 복원 및 매립지 조성, 치산 등 포함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건축시설	- 공동주택 - 공용청사 - 교육연구시설 - 병원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수시설 - 판매시설	-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군사 시설, 철도역사 등 포함 - 해당공사 구분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준 준용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수관거시설 - 발전시설 - 송전시설 - 변전시설 - 통신시설 - 가스저장·배송시설 - 유류저장·배송시설	- 종말처리장, 집단에너지, 증기배관, 차집관로 등 포함

※ 유의사항

1. 발주 대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적용범위**가 동일한 경우 인정
2.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3.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4.1. 일반사항

4.1.1. 총 칙

이 지침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제출기한 및 제출 부수

4.1.2.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4.1.2.2.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발주부서

4.1.2.3. 제출부수 :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자기소개서 5부(별도)

가. 규 격 : A4(210mm×297mm)

나. 용 지 재 질 : 백상지(80g/m²)

- 표지는 무늬없는 무광택 250스노우지(코팅 금지), 색상은 White(순백색)

다. 인쇄 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또는 복사본

라. 제 본 : 세로좌철(무사 무선철)

4.1.2.4. 전자문서 제출 : 서식3부터 서식15까지 제출내용을 엑셀(exel)파일로 작성한 후 USB(1매)에 저장하여 제출

4.2.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4.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公社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4.2.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2.3.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도 가능하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별점)확인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는 공고일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公社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이내인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원본 대조필인이 있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4.2.4.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대표자의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2.5.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2.6. 참여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평가내용 및 점수가 公社에서 평가한 점수보다 높게 자기평가된 경우 公社의 평가점수로 감점하므로 참여업체는 자기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公社의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결과를 개별통보하며, 公社의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참여업체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公社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의 100% 인정경력은 노란색으로 60% 인정경력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명서는 100% 인정실적은 노란색으로 60%(또는 70%) 인정실적은 빨간색으로 표시.

4.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본)순서

- 4.3.1. 표지서식 (서식 1)
- 4.3.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서식 2)
 - 첨부 :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4.3.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1)
- 4.3.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3)
 - 첨부 : 공동수급 협정서
- 4.3.5. 자기평가서 (서식 4)
- 4.3.6. 참여기술인 자격현황 (서식 5)
 - 첨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교육훈련 증명원 및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사본
- 4.3.7.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 (서식 6)
- 4.3.8.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사항 (서식 7)
- 4.3.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사항 (서식 8)
- 4.3.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9)
 - 첨부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실적)확인서
- 4.3.1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서식 9-1)
- 4.3.12.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서식 10)
 - 첨부 :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 4.3.13.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1)
 - 첨부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4.3.14.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서식 12)
 -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사본, 투자실적 증명원,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 4.3.15. 업무중첩사항 (서식 13)
- 4.3.16. 일반소방기술인(감리원) 배치현황 (서식 13-1)
- 4.3.17.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서식 14)
- 4.3.18. 가점 및 감점 (서식 15)
- 4.3.19. 건설공사 공사비절감 확인서 (서식 16)
- 4.3.20. 참여동의서 (서식 17)
- 4.3.2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 17-1)
- 4.3.22. 상주기술인 각서(정보통신 및 소방분야) (서식 18)
- 4.3.23. 기술지원기술인 각서(정보통신 및 소방분야) (서식 19)
- 4.3.24. 자기소개서(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서식 20)
- 4.3.25. 책임기술인 면접(발표) 심사표 (별지 1)
- 4.3.26. 분야별기술인 면접(발표) 심사표 (별지 1-1)
- 4.3.27. 기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서식 1】 표지서식

접수번호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 수 인

공고번호 :

용역명 :

발주기관 : 전 북 개 발 공 사

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평가서작성자 :

FAX번호 :

전화번호 :

※ 평가서는 세로좌철(무사무선철)하며 좌측에 세로로 용역명 및 참여업체명(공동도급사 포함)을 기재할 것.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용역명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하여 제반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기평가서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정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0 . . .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전북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북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번호	출자비율	비고
공동 이행					%	
					%	
					%	
분담 이행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번호	분담업종	비고
					%	
					%	
					%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공동수급일 경우)

출자비율별 참여기술인 투입인원

(예시)

구분	업체명	출자비율 (%)	참여기술인 총인원수 (인)	출자비율에 따른 인 원 (인)	참여기술인수(인)	
					투입 가능 참여기술인수	실투입 참여기술인수
공동 이행	A	60	9	9인*0.6 = 5.4인	9인*(0.5 ~ 0.7) = 4.5 ~ 6.3인 ≒ 5 ~ 6인	0인
	B	40		9인*0.4 = 3.6인	9인*(0.3 ~ 0.5) = 2.7 ~ 4.5인 ≒ 3 ~ 5인	0인

- ※ 1. '참여기술인 총인원수'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기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2. 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예 : 5.4인⇒5인, 2.7인⇒3인)
 3. 투입가능 참여기술인수를 미달 또는 과다 투입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4】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책임기술인 (성명)	등 급			-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년	15 (11)			
				직무분야 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년	3	
		교육훈련	교육훈련			2주이상 : 0.5점 1주이상 2주미만 : 0.3점	0.5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 0.5점 기 사 : 0.3점 산업기사 : 0.1점	0.5		
		책임기술인 소계				25 (21)		
	분야별기술인 (분야,성명)	등 급			-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월	15 (13)			
				직무분야 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년	3	
		교육훈련	교육훈련			2주이상 : 1.0점 1주이상 2주미만 : 0.5점	1	
				기술인별 계				
		분야별기술인 (분야,성명)	등 급			-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월	15 (13)			
				직무분야 실적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품질관리, 사업관리	년	3	
	교육훈련		분야별기술인			2주이상 : 1.0점 1주이상 2주미만 : 0.5점	1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교육수료 여부			※해당자만 명기
	기술인별 계							
	분야별기술인 소계				총점/평가대상기술인 수 = 평점	25 (23)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성명)	등 급			3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 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년	6			
				교육훈련	교육훈련	2주이상 : 0.5점 1주이상 2주미만 : 0.3점	0.5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 0.5점 기 사 : 0.3점 산업기사 : 0.1점			0.5		※해당자만 명기
		기술인별 계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성명)	등 급			3		
		해당분야경력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년	6		
		교육훈련	교육훈련	2주 : 0.5점 1주 : 0.3점	0.5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 : 0.5점 기 사 : 0.3점 산업기사 : 0.1점	0.5		※해당자만 명기
		기술인별 계					
	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총점/평가대상기술인수 = 평점	10		
	면접(발표)	책임기술인(성명)			4	0	0점표기
		분야별기술인(분야, 성명)			2	0	0점표기
	면접(발표) 소 계				6	0	0점표기
참여기술인 합 계					6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 실적(최근 3년간)	*주된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예시) 건진법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100%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70%		억 원	8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점수		점	2		
	소 계				10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점	7		
		참여기술인		월, 점			
	별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A사:부실별점 (부실점수) B사:부실별점 (부실점수)	5		
		참여기술인		성명:부실별점 (부실점수) 성명:부실별점 (부실점수)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등급	3		
	소 계				15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산식)	건,가중치 %	3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산식)	건,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산식)	건,가중치 %			
	소 계(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평균비율		%	7		
	소 계				10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현장배치 기술인수 : 명 교체건수 : 건 교체빈도율 :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 성명	교체건수 : 건		2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 성명	교체건수 : 건				
	소 계				5		
합 계					100		
가·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상주기술인 :			점	
			기술지원기술인 :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건설기술인신규고용인원(최근 1년간)/월평균고용인원(최근1년간) (A사 0.0%+B사 0.0% = 0.0%)			점	
	소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소속업체(해당시)			점	
			참여기술인			점	
	소 계					점	
	합 계(가점 및 감점)				최대5점	점	
	총 평점						점

※ 면접(발표) 점수는 참여업체에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우고 합계를 산출하여 작성할 것.

【서식 5】

참여기술인 자격 현황

구 분		분야	등급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 기술인	(성명)								
분야별 기술인	(성명)	(안전관리)						(안전관리)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 첨 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3.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한 분야별기술인은 “분야”란에 담당분야 및 “(안전관리)”로 기재하고, 및 “교육수료일자”란에 최근3년간 이수한 교육수료일자 및 “(안전관리 교육수료일자)”를 기재할 것.“

【서식 6】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평 점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 임 기술인 (성 명)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일÷365 년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연속경력 1년이상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경력 기재			
				해 당 분 야		~ (일)	
						~ (일)	
						~ (일)	
						~ (일)	
				소 계		일	
				해 당 분 야 이 외		~ (일)	
						~ (일)	
						~ (일)	
					소 계		일×0.6= 일
합 계		일					
분야별 기술인 (분야,성명)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30.4 개월		해 당 분 야		~ (일)	
						~ (일)	
						~ (일)	
					소 계		일
				해 당 분 야 이 외		~ (일)	
						~ (일)	
						~ (일)	
					소 계		일×0.6= 일
				합 계		일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성명)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365 년	
	~ (일)						
	~ (일)						
소 계		일					
해 당 분 야 이 외		~ (일)					
		~ (일)					
		~ (일)					
	소 계		일×0.6= 일				
합 계		일					

※ 책임기술인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할 것.

【서식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의 경 력	평 점	직무분야 용역참여 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 임 기술인 (성 명)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 ÷ 365 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 ÷ 365 년		합 계	일	
						~ (일)
						~ (일)
						~ (일)
						~ (일)
분야별 기술인 (성 명)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 ÷ 365 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 ÷ 365 년		합 계	일	
						~ (일)
						~ (일)
						~ (일)
						~ (일)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 ÷ 365 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시공 설계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사업관리	()일 ÷ 365 년		합 계	일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련없이 실제경력 중 주공종과 유사한 실적 수행기간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경력은 1건만 인정함.

【서식 8】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사항

○ 교육훈련이수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책임기술인				1주이상 2주미만 또는 2주이상
분야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점 수	1. 책임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이수(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0.3점) = 점 2. 분야별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0점 = 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 점 3. 기술지원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 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훈련 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3점 = 점			

○ 기술자격

참여기술인	성 명	자격종목	점수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산정	- 기술사 및 건축사 : 0.5점 = 점 - 기 사 : 0.3점 = 점 - 산업기사 : 0.1점 = 점			

※ 첨 부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 안전관리담당자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안전관리담당자				

【서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수행 실적금액			지분율	산정금액
	건설사업관리 (100%)	건축법·주택법상 감리(70%)	계		
A	10억	89억	99억	53%	52.47억
B	2억	110억	112억	47%	52.64억
합 계	-	-	-	-	105.1억

○ 회사명 : A

구 분		발주청	사 업 명	용역기간		전체 용역비 (천원)	해당기간 용역금액 (천원)	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실적 (천원)	용역개요
				착수	준공				
완 료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 (100%)		예시) 공고일이 '10. 9.20일인 경우	'06.05.20	'08.10.20	890,000	(13/29) 398,965	(100% 또는 70%적용) 398,965(100%)	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합 계								__천원 ①
	건축법· 주택법 감리 (70%)								
	합 계								__천원 × 70% = __천원 ③
수 행 중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 (100%)								
	합 계								__천원 ②
	건축법· 주택법 감리 (70%)								
	합 계								__천원 × 70% = __천원 ④
총 계			건설사업관리(100%)					① + ②(예시 3억+2억=5억)	
			건축법·주택법상 감리(70%)					③ + ④(예시 50억+40억=90억)	
			계					95억	

※ 1. 유사용역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예시) 공고일이 '10. 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 9.21일)

① 완료된 용역의 공사기간이 '06. 5.20 ~ '08.10.20 이고, 용역비가 890,000천원 일때

→ 총공사기간 : '06년(7개월)+'07년(12개월)+'08년(10개월)=29개월

→ 실적산정기간 : '07년(3개월) + '08년(10개월)=13개월

→ 평가금액 산정 : 13개월/29개월×890,000천원= 398,965천원

② 개월수 산정시 15일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미만일때는 절사

2.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3. 진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부분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인정하고 세부내용중 “금차수행분”은 기간이 용역인정 기간내에 포함되더라도 전액 인정하지 않음.

4. 위 서식은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예시로서 “토목 및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할 것.

첨 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실적) 확인서[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서식 9-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최근 5년간)

업체명	용역명	지분율	평가일	평가 점수	평균	점수	점수 (지분율반영)
공동수급사1 (대표사)							
공동수급사2							
공동수급사3							
공동수급사4							
공동수급사5	평가 결과 없음					1.6점	$1.6 \times \text{지분율} \%$
합 계(지분율 반영)							점

주 1) 용역수행성과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해당업체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를 지분율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평가한다.

주 2) 공동 및 분담이행의 업체 중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1.6”의 점수로 산정한다.

【서식 10】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1) 영업정지(용역사업자)

업체명	제재기관	제재기간	제재사유	감점
		~ (일)		
소 계		()월		

2) 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인)

분 야	참여기술인	처분기관	처분기간	자격 또는 업무정지내용	감점
			~ (일)		
소 계			()월		

3) 부실벌점 현황

구 분	업체명/성명	합산부실벌점	비 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소 계		()점	총합산 부실벌점 기재

※ 1.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참여기술인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면허보완(전기, 소방, 통신)에 의한 분담이행을 실시한 경우도 각 분담업체에 적용(공동도급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참여업체별로 감점)한다.

첨 부 : 각 관련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서식 11】

재정상태 건설도

업체명	신용평가구분 (기업신용,회사채, 기업어음)	등급평가일 (년,월,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점수

※ 첨 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2】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업체명	신기술 지정번호	고시 일자	만료 일자	개발 자수	기준 점수	점 수
건설 신기술	회사명(A)					2	(2점×지분율) /개발자수
	회사명(B)					2	
	합 계						

2)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

구 분	업체명	신기술 지정번호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금액 (천원)	가중치 (건수, 금액)	점수산정
건설신기술	회사명(A)							(0.5점×실적가중치 ×지분율)
	회사명(B)							
	합 계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회사명(A)							(0.3점×실적가중치× 기간가중치×지분율)
	회사명(B)							
	합 계							

- ※ 1.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활용실적(건수 또는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계산.
2. 건설신기술은 활용실적(건수 또는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첨 부 : 신기술등록증사본,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거 지정·고시한 위탁기관 발행), 특허등록증사본,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발행)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㉔	A	B	A/B ㉕	A	B	A/B ㉖		
회사명(A)										$(\text{㉔}+\text{㉕}+\text{㉖})\div 3$ × 참여지분율=	
회사명(B)										$(\text{㉔}+\text{㉕}+\text{㉖})\div 3$ × 참여지분율=	
합 계										A+B	

- ※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간의 “투자실적 증명원” 원본 첨부.

【서식 13】

업 무 중 첩 사 항

구 분 (성 명)		타 용역 배치현황		과업내용서상 배치시기	신고 여부	적격 여부	비고
		용 역 명	배 치 기 간				
책임 기술인	홍길동	○○.... 용역	‘00. 0. 0 ~ 현재		신고	적격	
분야별 기술인	○○○	없음	-			적격	
	○○○	○○.... 용역			미신고		
	○○○	.	.				
	○○○						
기술 지원 기술인	건축	○○○	○○.... 용역	‘00. 0. 0 ~ 현재		신고	적격
			○○○	‘00. 0. 0 ~ 현재		미신고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토목	○○○	○○.... 용역	‘00. 0. 0 ~ 현재		신고	적격
			○○○	‘00. 0. 0 ~ 현재		신고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기계	○○○	○○.... 용역	‘00. 0. 0 ~ 현재		
	기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전기		○○○	○○○	‘00. 0. 0 ~ 현재		
		○○.... 용역		‘00. 0. 0 ~ 현재			
		○○.... 용역		‘00. 0. 0 ~ 현재			
		전기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정보 통신	○○○					
		정보통신분야 기술지원기술인(성명) 배치 현장수 = 0개					

※ 1. 당해용역에 배치된 경우도 1개 현장으로 산정할 것.

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사항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 고 건 : 경력증명서(업무중첩 근무지 표시),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발점확인서(전기),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소방) 제출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서식 13-1】

일반 소방기술인(감리원) 배치현황(예시)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신고여부	연면적
기계 분야	○○○				m ²
					m ²
		소 계			m ²
전기 분야	○○○				
		소 계			

※ 당해용역에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도 1개현장에 포함됨.

※ 관할 소방서에 신고한 ‘배치신고서 사본’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등 소방서 발급서류 등 첨부
(미신고 건인 경우 연면적 확인서류 첨부)

【서식 14】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회사명	점 수 계 산	
	교체빈도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계 산 값
회사명(A)	1.12%	지분율 60%일때 $1.12\% \times \text{지분율} 60\% = 0.672\%$
회사명(B)	0.56%	지분율 40%일때 $0.56\% \times \text{지분율} 40\% = 0.224\%$
합 계	$0.672\% + 0.224\% = 0.896\% \rightarrow 5\% \text{ 미만에 해당}$ 최종점수 : 5점	

2) 참여기술인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교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점 수	비 고
책 임 기술인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 주 기술인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기술지원 기술인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 기술지원현장 : 건×0.1점 =	
합 계				

- ※ 1.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2. 첨 부 :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서식 15】

가점 및 감점

1)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참여감리원	건 명	공사비 절감금액	절감 기여율	절감금액	가중치	점 수
	○○○	8억원	40%	3.2억원	0.5	0.1점×0.5=0.05점
	○○○	15억원	70%	10.5억원	1.0	0.1점×1.0=0.10점
합 계						0.15점

※ 첨 부 : 해당 발주청 확인서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구분	참여업체A	참여업체B		비고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A)				최근 1년간, 공고일 전월 기준
평균 고용인원(B)				최근 1년간, 월 평균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C)=[(A)÷(B)]×100				
점수산정(점) (D)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공동도급 참여지분율(%) (E)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점수(점) (F)=(D)×(E)				
평가점수(점)				참여업체별 점수(F) 합계

※ 공고일 전월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및 최근 1년간 월평균고용인원을 증명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 첨부.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기술인	참여업체	행정처분 또는 피해금액	감점 점수	비고
계				

※ 첨부 : 형사처벌 관련 문서 등 관계서류

【서식 16】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기여율(%)	절감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서식 17】

참 여 동 의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전북개발공사

본인은 상기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으로서 현재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서 본 용역 참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참여에 동의하며, 귀 공사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서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참여기술인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모든 참여기술인이 이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서식 17-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 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참여 업체 및 기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 업 명	

전북개발공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현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학력, 출신학교, 자격증 보유현황, 전문분야, 경력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업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인권실태조사 등 이해관계자 관련 업무 이행	<u>선정자 : 영구</u> <u>미선정자 : 업체 선정 완료 후 즉시 파기</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u>전북특별자치도</u>	선정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	<u>전북특별자치도</u> <u>고객만족도 조사</u>	<u>사업 종료 시까지</u>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개발공사 귀중

※ 사업자(법인)은 각각의 대표자가 확인(또는 직인날인)하며, 모든 참여기술인이 각 각 확인해야 함.



【서식 18】

상주기술인 각서(소방, 정보통신)

성 명 :

생년월일(주소) :

참 여 분 야 : 소방, 정보통신

상기 소방(통신)분야 상주기술인은 ○○○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 ○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일 현재[과업내용서상 배치(예정) 시기 기준] 타용역에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해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분담이행(면허보완) 형식인 경우 소방감리업체(통신감리업체) 대표이사 날인필요.

【서식 19】

기술지원기술인 각서(소방, 정보통신)

성 명 :

생년월일(주소) :

참 여 분 야 : 소방, 정보통신

상기 소방(통신)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일 현재[과업내용서상 배치(예정)시기 기준] 타용역의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해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 ○ ○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분담이행(면허보완) 형식인 경우 소방감리업체(통신감리업체) 대표이사 날인필요.

【서식 20】

[illegible]

<별지 1>

책임기술인 면접(발표)심사 평가표

용역명 :

심사위원 : (서명)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호(업체별)					
		수	우	미	양	가	업체 식별 표시
1. 책임기술인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2.0	평가점수 :					
가. 현장조직(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 및 리더쉽 나. 책임기술인으로서 현장내 전체조직을 조 화시켜 나갈수 있는 기술력 다.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가중치 적용)	2.0	1.8	1.6	1.4	1.2	0.0
2. 책임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2.0	평가점수 :					
가. 책임기술인으로서 자질(경험)과 능력 나. 건설기술인이 갖추어야할 교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	(가중치 적용)	2.0	1.8	1.6	1.4	1.2	0.0
합 계	4.0	평가점수 합계 :					

※ 1.참여업체의 상대평가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별표 2: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자기소개서 및 면접(발표)시 소속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발표할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별지 1-1>

분야별기술인 면접(발표)심사 평가표

용역명 :

심사위원 : (서명)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호(업체별)					
		수	우	미	양	가	업체 식별 표시
1. 분야별기술인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1.0	평가점수 :					
가. 현장조직(시공사 및 협력사)에 대한 지도 감독능력 및 기술력 나. 건설기술인으로서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무행정능력 다. 소관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가중치 적용	1.0	0.9	0.8	0.7	0.6	0.0
2. 분야별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1.0	평가점수 :					
가. 건설기술인으로서 자질(경험)과 능력 나. 건설기술인이 갖추어야할 교양, 인품, 청렴도 등 인성	가중치 적용	1.0	0.9	0.8	0.7	0.6	0.0
합 계	2.0	평가점수 합계 :					

※ 1.참여업체의 상대평가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별표 2: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자기소개서 및 면접(발표)시 소속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발표할 경우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